

◆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-108호

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·대상·지역 등 고시

「내수면어업법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강본류에서의 유어행위 제한 시기·대상·지역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.

2025년 3월 20일
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

1.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·대상 등 제한사항

가.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: 고시일 ~ 2029. 12. 31

나. 유어행위 제한대상

- 1)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
- 2) 자망어업, 투망어업, 연승어업, 정치망어업
- 3)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(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, 낚시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 제외)
- 4) 떡밥·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
- 5) 홀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홀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
- 6) 은어 등 「내수면어업법 시행령」 별표 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, 채취하는 행위
- 7)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
- 8)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
- 9) 팔당댐 방류량 12,000m³/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

2.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

가. 명 칭: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지역

나. 위 치

- 1)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~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
- 2)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교량
- 3)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(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통행로 포함)

다. 유어행위 금지지역: 다음의 좌표값에 해당하는 지역

구 분	연번	구 역	경위도 좌표 (도/분/초)			비 고
			구분	위도	경도	
독 섬 1지역	1	자양2동 잠실수중보 ~ 청담대교 상류 67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1' 38"	127° 05' 20"	
			종점	37° 31' 36"	127° 04' 38"	
독 섬 2지역	2	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 ~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1' 40"	127° 04' 31"	
			종점	37° 32' 06"	127° 03' 08"	

구 분	연번	구 역	경위도 좌표 (도/분/초)			비 고
			구분	위도	경도	
독 섬 3지역	3	서울숲 회전 고가시설 ~ 종량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2' 29"	127° 01' 48"	
			종점	37° 32' 40"	127° 01' 53"	
이 촌 1지역	4	종량천 합류부 ~ 동호대교 복단 하류 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2' 23"	127° 01' 08"	
			종점	37° 32' 16"	127° 00' 59"	
이 촌 2지역	5	동호대교 복단 하류 800m ~ 한남대교 복단 상류 380m 사이의 전망데크	시점	37° 31' 57"	127° 00' 47"	
			종점	37° 32' 01"	127° 00' 48"	
이 촌 3지역	6	노들섬 전체, 한강대교 복단 상류 900m (거북선선착장) ~ 한강대교 복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1' 14"	126° 57' 39"	
			종점	37° 31' 01"	126° 58' 11"	
밤 섬 지 역	7	밤섬 전체 및 마포대교 복단 상류 650m ~ 당산철교 복단 상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2' 34"	126° 54' 57"	
			종점	37° 37' 01"	126° 56' 51"	
망 원 1지역	8	양화대교 복단 교량~합정동 양화대교 복단 하류 5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2' 58"	126° 54' 09"	
			종점	37° 32' 47"	126° 54' 26"	
망 원 2지역	9	성산대교 복단 상류 600m 교량 ~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3' 08"	126° 53' 54"	
			종점	37° 33' 21"	126° 53' 37"	
망 원 3지역	10	당산철교 복단 상류 500m ~ 당산철교 복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2' 33"	126° 54' 57"	
			종점	37° 32' 38"	126° 54' 38"	
난 지 1지역	11	홍제천교~성산대교 복단 하류 1,300m (조종면허시험장 하류 50m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3' 48"	126° 52' 55"	
			종점	37° 33' 33"	126° 53' 32"	
난 지 2지역	12	가양대교 복단 상류 800m(난지캠핑장 끝 호안 하류 측) ~ 가양대교 복단 하류 4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(생태습지원 연결한 내수면 포함)	시점	37° 34' 32"	126° 51' 43"	
			종점	37° 34' 12"	126° 52' 13"	
난 지 3지역	13	월드컵대교 복단 하류 750m ~ 월드컵대교 복단 하류 9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3' 49"	126° 52' 48"	
			종점	37° 33' 51"	126° 52' 42"	

구 분	연번	구 역	경위도 좌표 (도/분/초)			비 고
			구분	위도	경도	
잠 실 지 역	14	잠실5동 잠실수중보 ~ 잠실수중보 하류 1,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1' 14"	127° 05' 38"	
			종점	37° 31' 05"	127° 04' 49"	
잠 원 지 역	15	동호대교 남단 하류 300m(리버시티) ~ 한남대교 남단 하류 1,000m(요트 클럽 하류 100m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1' 05"	127° 00' 26"	
			종점	37° 31' 49"	127° 01' 18"	
반 포 1지역	16	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상류 200m (전망데크) ~ 하류 500m(임시선착장)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0' 47"	127° 00' 04"	
			종점	37° 30' 33"	126° 59' 36"	
반 포 2지역	17	동작대교 남단 상류 450m(서래섬 하류 100m) ~ 동작대교 남단 하류 28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0' 24"	126° 59' 08"	
			종점	37° 30' 20"	126° 58' 40"	
흑 석 지 역	18	한강대교 남단 상류 1,360m(한강현대아파트 114동 앞) ~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0' 25"	126° 58' 17"	
			종점	37° 30' 55"	126° 57' 11"	
여의도 1지역	19	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~ 서강대교 남단 하류 370m 사이의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1' 12"	126° 56' 38"	
			종점	37° 32' 03"	126° 55' 07"	
여의도 2지역	20	여의도동 셋강 내수면 전역(상·하류 합류부 및 연결한 내수면 포함)	시점	37° 31' 11"	126° 56' 41"	
			종점	37° 32' 04"	126° 54' 37"	
양 화 1지역	21	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(여의도 셋강 하류 합류부) ~ 당산철교 남단 60m(해양소년단 수상훈련장)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2' 06"	126° 54' 34"	
			종점	37° 32' 17"	126° 54' 16"	
양 화 2지역	22	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600m~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3' 12"	126° 52' 45"	
			종점	37° 32' 41"	126° 53' 37"	
양화3- 강서1 지역	23	염창동 안양천 합류부 하류 150m ~ 마곡철교 남단 하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3' 20"	126° 52' 28"	
			종점	37° 34' 46"	126° 49' 59"	

구 분	연번	구 역	경위도 좌표 (도/분/초)			비 고
			구분	위도	경도	
강 서 2지역	24	방화대교 남단 하류 50m ~ 행주대교 남단 상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	시점	37° 35′ 27″	126° 48′ 29″	
			종점	37° 35′ 06″	126° 49′ 12″	

라. 유어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

- 1)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, 복원행위
- 2)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, 생태계의 보전, 복원행위, 조수보호 및 수렵 관련 법률에 의한 서식지 조사 등은 제외

3.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

가.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－ 개별 부과기준

연번	금지행위	과태료금액(단위: 원)		
		1차	2차	3차
1	유어행위 금지지역 내에서 낚시행위자 (「내수면어업법」 제18조 위반자)	500,000	700,000	1,000,000
2	은어포획, 낚시대 4대이상, 갈고리 낚시 등 제한 사항 위반자 (「내수면어업법」 제18조 위반자)	500,000	700,000	1,000,000
3	어분,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(「하천법」 제46조 위반자)	1,000,000	2,000,000	3,000,000
4	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자 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9조 위반자)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

나. 근거규정

- －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8조 및 제27조제2항제1호
- － 「하천법」 제46조 및 제98조제2항
- －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9조 및 제55조제2항제1호
- －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8조 및 제20조

4.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가. 관리기관: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

나. 기 타

- 유어행위의 시기, 대상, 지역 등 제한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(<http://hangang.seoul.go.kr>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(☎ 02-3780-078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